

가죽제품

부속서 3

(Leather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꼴

KS K 0611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 : 종류수추출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문도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KS M 6902 가죽의 크로뮴(VI) 함량 측정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폼알데하이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종류수 추출법)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 방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PCP함유량 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제품은 합성 가죽을 제외한~~ 천연모피제품은 합성 가죽을 제외한)을 말한다.

3.2 “천연가죽”이라 함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 부패를 막기 위한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하이드(말, 소 등 큰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송아지, 돼지, 양, 뱀 등 작은 동물의 가죽)을 말한다. 무두질 전 또는 후에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와 망상층의 하층부를 분리하여 만든 은면革(銀面革, grain)과 상혁(床革, split)도 천연가죽에 포함된다.

주 1.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니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 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 mm 미만이어야 한다.

3.3 “인조가죽”이라 함은 천연가죽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원료 및 처리공정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으로 분류한다.

3.3.1 “코팅가죽”이라 함은 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롤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주) 코팅 두께의 측정은 **KS M ISO 17186**을 따른다.

3.3.2 “라미네이팅가죽”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가죽 층 또는 한 개의 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3.3.3 “재조합가죽”이라 함은 무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을 의미한다.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 등이 해당된다.

3.3.4 “합성가죽”이라 함은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합성피혁 원단(파이록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합성가죽의 총칭)을 의미한다.

3.4 “천연모피”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한다.

3.5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3. 세부분류)에 따른다.

3.6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초과 만 12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으로 내 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7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피부 접촉정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 제품류”로 구분하며, 세부구분은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단, 카페트에 한하여 면적이 1m²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작은부품 유아용 가죽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부품이 부착된 경우, 5.1.1.2에 따

른 시험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S K ISO 6330[제작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KS K ISO 3175-1에 따라 시험할 경우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4.1.2 위해자석 (5.1.2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는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부록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KS K 0941 또는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과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어린이 및 성인용 제품일 경우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 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함).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구분	유아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제품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PCP)(mg/kg) ⁽¹⁾ ⁽²⁾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mg/kg) ⁽²⁾		0.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²⁾				0.1 이하		
아릴아민(mg/kg) ⁽³⁾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⁴⁾	DEHP, DBP, BBP DINP, DIDP, DNOP	0.1이하	0.1이하	-	-	-
유기주석 화합물 (mg/kg) ⁽⁵⁾	DBT(dibutyltin) TBT(tributyltin)	1.0 이하 0.5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납(mg/kg) ⁽⁶⁾		90 이하	90 이하	-	-	-
카드뮴(Cd) ⁽⁷⁾		75 이하	75 이하	-	-	-
니켈(μg/cm ² /week) ⁽⁸⁾				0.5 이하		

-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 4.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 확인기준, 아동용 가죽제품의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다.
- 5.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 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 이하로 한다.
- 7. 페인팅, 코팅, 금속제품의 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한한다.

4.3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생활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가죽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구조

5.1.1 작은부품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를 따른다.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4.6.4를 따른다(이 때 부착강도 기준치는 $50 \text{ N} \pm 2 \text{ N}$).

5.1.2 위해자석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부록1에 따른다.

5.1.3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따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품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 KS M ISO 17226에 따른다.

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6902, KS M ISO 17025에 따른다.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B(유아·용 섬유제품-다이메틸푸마레이트 정량방법)에 따른다.

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에 따른다.

5.2.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C(어린이용 장신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따른다.

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2.8 납 및 카드뮴 함유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A(어린이용 장신구-납 및 카드뮴 함유량)에 따른다.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1.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6.1 품명은 가죽제품이라 표시한다.

6.2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6.3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6.4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표시사항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7.1 재료의 종류 (조성 표시)

7.1.1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7.1.2 천연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표시하고 표 2와 같이 동물명을 부기한다.

표 2 천연가죽의 동물종을 표시하는 용어

	천연가죽의 동물종	표시명
천연가죽	소의 가죽	천연가죽(소가죽)
	양의 가죽	천연가죽(양가죽)
	염소의 가죽	천연가죽(염소가죽) ⁽¹⁾
	사슴의 가죽	천연가죽(사슴가죽)
	돼지의 가죽	천연가죽(돼지가죽)
	말의 가죽	천연가죽(말가죽)
	개의 가죽	천연가죽(개가죽)
	뱀의 가죽	천연가죽(뱀)
	위의 각항에 규정된 이외의 동물종 가죽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

주 1.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7.1.3 3.3.1와 3.3.2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하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가죽(폴리우레탄 코팅), 라미네이팅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등). 3.3.3에 따라 재조합가죽에 해당할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하고, 재조합 방식을 부기하거나(예 :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그라인딩가죽), 인조가죽(분쇄가죽) 또는 재조합가죽(본딩가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 등),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율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가죽 60%, 기타 40%) 또는 재조합가죽(가죽 60 %, 기타 40%)). 3.3.4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합성 가죽)’으로 표시하거나 ‘합성가죽’으로 표시한다.

7.1.4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로 표시하고 동물명을 부기한다(예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

7.1.5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이 섬유재질일 경우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7.2 치수 표시

7.2.1 치수 표시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2.2 가죽 및 모피의류의 경우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9]에 따르며, 신체 치수를 표시한다.

7.2.3 신발치수는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발길이(mm)를 표시 한다.

7.2.4 치수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7.3 단위 성분·성능·규격 등의 표시에 있어서의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

7.4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처·제조·생산·판매·부수출처 등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가죽제품 표시 사항 형식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치수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9. 취급상 주의사항

[별표 2]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방법

1. 가죽 및 모피의류 가죽 및 모피의류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가죽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또는 가죽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겹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가죽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2. 가방 및 핸드백 가방 및 핸드백은 손질방법 및 보존방법인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2.1 천연가죽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2.2 인조가죽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3. 신발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3.1 천연가죽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솔로 잘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3.2 인조가죽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기타 가죽제품 기타 가죽제품은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5호(2007. 1. 24)
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9호(2009. 12. 30)
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 21)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